

 <b>국토교통부</b>	<h1>보 도 자 료</h1>		<small>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small> <b>보 다 나 은 정 부</b>
	배포일시	2018. 9. 3.(월) / 총5매(본문4)	
담당 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 당 자	·과장 김유진, 사무관 이성민, 주무관 전성진 ·☎ (044) 201-4623, 4624, 4627	
보 도 일 시	2018년 9월 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3.(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 철도 개통 전 ‘안전성’ 검증 강화…내년부터 적용

### - 9월 14일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앞으로 무인운전시스템의 도시철도를 개통하는 경우에는 화재, 사고 등 이례사항에 대한 긴급대응능력 숙지를 위해 영업시운전을 60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 개통 전 시행하는 종합시험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23일간) 행정예고 한다.
-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개통 초기에 발생하는 사고·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장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 인천2호선 개통('16.7.30) 후 전기설비 오동작에 따른 단전, 신호장치 고장 등 발생  
 우이신설선 개통('17.9.2) 후 전차선 지지대 파손, 신호장애 등 발생

▶ **(철도종합시험운행)**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한 경우, 개통 전 철도시설의 정상여부 확인, 종사자 업무숙달 등을 위해 시행하는 시험

\* (근거) 철도안전법 제38조,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고시)

▶ **철도종합시험운행 절차**

<b>사전준비</b> 철도시설의 성능과 완공 가능 여부를 자체점검	⇒	<b>시설물검증시험</b>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정상작동 여부 등을 검증	⇒	<b>영업시운전</b> 열차운행체계와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
--	---	--	---	--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행주체를 구분

-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은 철도시설 관리자가 주관하고, 종사자 업무숙달을 위한 영업시운전은 철도 운영자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 당초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의 모든 과정을 주관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시운전의 계획수립, 시행, 결과 보고는 철도운영자가 주관하게 된다.

② 장애 원인분석 보고 의무화

-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 근본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종합시험운행 절차 개선

- 철도시설관리자는 신호·전차선·기계설비 등 종합시험운행 대상 철도시설을 모두 완공한 후에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해야 한다.
- 또한,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제출할 때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당초 시험기간의 1/2 이상으로 규정하여, 각 단계별 최소 시험기간을 확보하고,
-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지진·화재·사고 등 다양한 이례상황에 대한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로 할증한다.

당초			
종합 시험 운영	고속	신설	90일 이상
		개량	40일 이상
일반 도시	고속	신설	60일 이상
		개량	40일 이상

→

변경			
시설물 검증시험	고속	신설	45일 이상
		개량	20일 이상
	일반 도시	신설	30일 이상
영업시운전*	고속	신설	45일 이상
		개량	20일 이상
	일반 도시	신설	30일 이상
		개량	20일 이상

\* 무인운전의 영업시운전은 그 기간을 2배로 함

#### ④ 전문기관 컨설팅 제도 도입

-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하기 **3개월**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와 **사전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 교통안전공단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개선·시정명령, 종합시험운영 유의사항 등을 컨설팅하고,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세부일정, 전담조직 등을 협의

#### ⑤ 도시철도에 대한 시도지사 역할 강화

- 도시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영 결과를 시도시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검토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 또한, 국토부장관은 종합시험운영에 대한 검토결과와 개선·시정명령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 시도지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 이밖에 시행지침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철도종합시험운영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e-mail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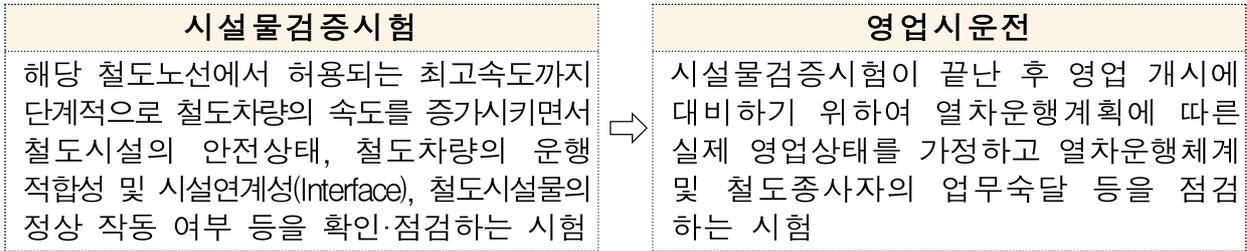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627, 팩스 044-201-5673, 이메일 [chunsi@korea.kr](mailto:chunsi@korea.kr))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철도종합 시험운행을 시행하게 되면, 철도 품질과 서비스가 개선됨으로써 국민들이 철도를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홍서표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 시설안전과 이성민 사무관(☎ 044-201-46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 철도종합시험운행이란?

-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시행하는 최종 검증절차임
-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설물 검증시험과 열차운행체계와 종사자 업무숙달을 점검·확인하는 영업 시운전으로 구분됨



2. 철도종합시험운행이 완료되면 바로 개통하는 것인지?

- 철도종합시험운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더라도,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후에 개통해야 함

\* (안전관리체계)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 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이번 지침개정으로 철도개통이 늦어지는 것 아닌지?

- 이번 지침개정은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좀 더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일부 시험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
- 특히,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영업시운전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데, 이는 철도종사자가 이례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능력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함임